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관한 小考

—지역 주민에 대한 필수적 고지에 관하여—

Thinking about the Sex Offenders Notification System

—Regarding Necessary Notification to a Local Resident—

김 혜 민*

Kim Hye Mi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대한 비판 |
| II.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 V. 결론 |
| III. 해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의 일정한 주민에게 우편을 통해 고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어떤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을 할 때 법률에 규정된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대상에 대해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의 거주지역에 변동이 생길 때만 발송이 되며 이후에 별도의 예방조치는 행해지지 않는다.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만 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싶지 않은 시민도 있겠지만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서는 고지서 수령대상이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성범죄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고지방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신상정보 고지서의 고지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것보다 고지서의 수령대상자 가운데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은 시민도 존재함을 상기시키는데 글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https://doi.org/10.35148/ilsilr.2023..54.101>

투고일: 2023. 3. 31. / 심사완료일: 2023. 4. 20. / 게재확정일: 2023. 4. 24.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연구센터 연구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Resercher,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주제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메건법, 사라법, 모를 권리

I. 서론

2020년 12월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조두순은 2008년 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상대로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로 그의 출소를 두고 몇 년 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였다. 조두순이 이미 형기를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에도 그가 저지른 범죄에 비해 선고받은 형이 가볍다며 조두순의 형기를 늘려달라는 국민청원이 몇 차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올라오기도 하였다.¹⁾ 2009년 조두순은 대법원에서 12년의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를 선고받았다. 2020년 출소 후 거주하려는 지역이 TV와 신문을 통해 알려지자 조두순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전화와 SNS가 3600통이 넘었다는 사실이 지역의 시장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²⁾ 조두순은 사회 복귀와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으며 이름,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와 그가 저지른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인터넷 웹사이트인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그의 거주 지역 인근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모바일 앱과 우편을 통해 그의 신상정보 고지서가 발송되었다.

최근에는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형기를 마친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기사화되자 출소 후 김근식이 어디로 전입할 것인지 그가 과거에 살았던 지역과 성범죄를 저질렀던 지역을 두고 추측하는 기사들이 많았다.³⁾ 이미 인터넷상 아이를 키우는 맘카페를 중심으로 김근식이 출소 후 거주할

1) 조두순은 1심에서 징역 12년, 열람 정보 5년간 제공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다. 2017년 조두순의 형기가 3년밖에 남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는 그를 재심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61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였다. 2018년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으며 26만 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였다.

2) 쿠키뉴스, 임지혜, “[놀이터 통신] ‘성범죄자 이웃’ 생길까 두려운 학부모들”, 2021. 08. 23,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8200198>>, 검색일: 2023. 03. 23.

3) 조선일보, 이가영,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신상공개는 되지만 ‘고지’는 안 된다”, 2022. 09. 0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4/UFCC5DDR2NDCVEXJ7HHAXRWOXM/>, 검색일: 2023. 03. 23; 서울신문, 김유민, “‘불안해 죽겠다’...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후 거주지는”, 2022. 09. 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4500059>>, 검색일: 2023. 03. 23; 뉴스1, 박아론, “다

지역으로 경기도의 몇몇 도시들이 거론되던 상황이었고 출소 후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입소가 결정되자 의정부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⁴⁾

조두순이나 김근식이 흉악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인이나 방화, 강도 등과 같은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범행과 신상은 일반 대중에게 자세히 알려져 있다. 물론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를 다루는 언론의 자극적이고 경쟁적인 보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러한 언론의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이면에는 성범죄자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책임으로 부여되는 형벌 외에 전자발찌라고 칭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 같이 사회 내에서 시행되는 형사제재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출소 후 성범죄자가 거주할 지역의 일정한 주민에게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고지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 및 고지하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러한 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다.⁵⁾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⁶⁾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법관의 판결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다.

이에 아래 논의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가운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만을 다루는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고지제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개에서 나아가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일정 주민들에게 국가가 직접 신상정보를 알려준다는 점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려 한다. 왜냐면 이미 일반 시민에게 공개된 신상정보지만 신상정보를 내가 필요해서 찾아보는 것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고지서를 받는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에 정해져 있으며 법률에 규정된 대상에 포함되지만 하면 고지서 수령에 대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

시 인천으로?” 미성년 11명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앞두고 주민들 불안”, 2022. 09. 02, <<https://www.news1.kr/articles/?4791340>>, 검색일: 2023. 03. 23.

4) 김근식은 출소 후 의정부에 있는 갇새시설에 입소하기로 하였고 그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는 통행차량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6) 아래 논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약칭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청소년 성보호법에 규정된 고지서 수령자의 수령 의사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는 지금의 방식에 대한 비판과 수령자의 ‘모를 권리의 보장’에 대한 논의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결국 국가의 범죄예방 책임을 일반 대중에게 전가하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목적과 성격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제도의 방식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의 객관적인 비교 또한 필요하다. 우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법적 성격과 목적, 제도와 관련된 당사자를 살펴보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II.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는 1990년대 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소위 원조교제)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었다. 정부는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 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람,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행위를 한 사람,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의 성명, 나이, 직업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와 범죄사실 요지가 쓰인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것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 게시판에 1개월간 게재토록 하였다.⁷⁾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여러 번 개정을 거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름이 바뀌고 다른 제도들도 법률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도 2010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도입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 선고 이상을 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⁸⁾ 이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00. 7. 1.] [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0. 10. 23.] [대통령령 제16992호, 2000. 10. 23., 제정]

8) 배중대/홍영기, 형사정책 제2판, 홍문사, 2022, 483쪽.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는 ‘성범죄자 알람’을 통한 공개와 모바일 앱과 우편을 통한 고지를 모두 포함하는 제도지만 아래 논의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구분하여 모바일 앱과 우편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만을 다루겠다.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의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등록제도에 뒤이어 가장 늦게 도입된 제도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바일 앱과 우편물을 통해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⁹⁾

1.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⁰⁾

15세 여성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청구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조항이 성범죄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청구인의 제청신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살펴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은 성범죄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9)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었고, 2006년 6월 30일에 동법의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2010년 1월 1일 동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서 열람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동일지역의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 백서, 여성가족부, 2022, 347쪽 이하; 박광현,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15쪽.

10)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164(병합) 결정.

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합헌 결정하였다.

결정의 논거들 가운데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심사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자의 출소 후 그가 거주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과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 있는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려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할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과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 있는 기관의 장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은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본다.

즉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는 이유를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자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성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게끔 하고 성범죄자는 신상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자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 사진을 포함한 외견상 포착할 수 있는 신체적인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상세히 알리기 때문에 쉽게 성범죄자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의 사전 차단 효과와 지역 주민들의 성범죄자에 대한 주의를 기대할 수 있다.¹¹⁾

1.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당사자

1.2.1 신상정보가 고지되는 성범죄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받는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위의 ①, ②의 죄를 저질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이나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11) 박찬걸,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고지·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13쪽.

처음에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만 고지되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신상이 고지되는 범죄자가 늘어났다. 2013년 6월 19일 개정된 법률에서는 성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포함하였으며 2020년 11월 20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도 고지대상에 포함되었다. 현재는 성범죄의 대상과 형태를 불문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가 고지되고 있다.

고지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키, 몸무게, 최근에 찍은 사진과 같은 외형의 정보와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횡수, 죄명), 성범죄 요지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상세주소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성범죄자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까지 기재되어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1항이 신상정보 고지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신상이 고지되는 성범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형법」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1.2.2 고지서를 수령하는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는 대상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5항에 규정해 놓았다. 신상정보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의 장,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장이다. 주민센터장은 받은 신상정보 고지서를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형식으로 고지 명령을 집행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대상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거쳐 확대되었다. 2011년 1월 1일 처음 제도를 시행했을 때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만 고지서를 받았지만 2012년 9월에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등학교 학교의 장이 추가되었으며, 2013년에는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경계를 같이하는 읍·면·동 포함)과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현재는 고지명령의 집행 이후 관할구역에 출생신고·입양신고·전입신고가 된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및 관할지역에 설립·설치된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장, 초·중등학교 학교의 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¹²⁾

1.2.3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절차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처음 제도가 신설되었을 때에는 범죄의 대상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만을 고지대상자로 삼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지명령을 집행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고지명령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무부 장관이 고지명령을 집행하였다. 2013년부터는 시행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하도록 일원화되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고지되는 절차의 단계를 나누자면 첫 번째 법원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신상등록대상 성범죄자의 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후, 두 번째 법무부에서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공개 및 고지에 필요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여성가족부로 전송하면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가 공개와 고지명령을 집행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법원의 신상정보 고지명령 선고, 법무부의 신상정보등록, 여성가족부의 집행 순으로 3단계의 절차를 거쳐 고지되고 있다. 고지명령의 집행방식은 수단별로 모바일, 우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고지로 분류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한 고지는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한 고지정보서의 전송으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앱으로 열람할 수 있고, 우편 고지는 종이문서로 제작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¹³⁾ 신상정보 고지대상 성범죄자가 새로 발생하거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입 또는 전출이 발생하면 법률에 규정된 고지서 수령 대상자에게 일괄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고지서가 발송된다.

모바일 앱을 통한 고지서 확인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가구에 한하여 우선 1차로 성범죄자의 신상 고지서를 보내고 일정기간 확인하지 않은 가구만 다시 우편으로 고지를 재송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구의 세대주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¹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기존의 고지방식인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연혁.

13)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2022. 8. 18, <<https://m.sexoffender.go.kr/m3s7.nsc>>, 검색일: 2023. 3. 11.

14) 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백서, 349쪽 이하.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성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형벌로 봐야 하는지 보안처분으로 봐야 하는지 현재까지 논쟁이 존재한다. 아래의 논의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비교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적용 영역은 계속해서 확대됐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대상인 성범죄의 종류와 고지서를 수령하는 일반 시민들의 범위는 개정을 거치면서 늘어났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법적 성격을 보안처분으로 보고 있다. 책임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형벌이 아니므로 성범죄 예방이라는 주장 아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는 수령대상의 범위를 점차 확장할 수 있었다.

2.1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미

우리나라는 범죄에 대한 효과로써 부과되는 형사제재를 형벌과 보안처분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이를 형사제재 이원주의라고 하며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형벌과 보안처분 두 가지를 부과해도 된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해악으로 협의의 형벌과 광의의 형벌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형벌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9가지 형벌(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광의의 형벌은 협의의 형벌과 보안처분을 결합한 개념이다.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 행위자의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사회안전의 도모와 행위자의 사회 복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형사제재인 것이다.¹⁵⁾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로 부과되는 것은 형벌과 보안처분 모두 같지만, 부과되는 목적과 그것을 통해 얻으려는 효과는 다르다. 형벌은 행위자가 저지른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로 부과되는 형사제재이며 보안처분은 행위자가 장래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행위자에 대한 개선 및 보안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과된다. 즉 형벌은 행위자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이며 보안처분은 행위자가 장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임을 알 수 있다.

15)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결정.

2.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법적 성격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나아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과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리고 있다.¹⁶⁾ 그러나 지역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범죄사실과 신상정보를 알리는 것이 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형벌보다 강력하게 개인을 구속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보안처분이 아니라 수치형의 성격을 지닌 형벌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¹⁷⁾ 즉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형벌의 종류를 규정한 형법 제41조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인에게 자신의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알려지게 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실질적으로 명예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거주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 자체에서 성범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새로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새로운 형벌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시행시점을 살펴봐도 보안처분임을 알 수 있는데 명령이 효과를 발하는 시점은 선고받은 형벌의 종료 후다. 만약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형벌이라면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된다.

그럼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부과되기 때문에 특정 범죄를 저질러서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지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에 부합하여 장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선고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법률의 일부 조항에서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부과하는데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해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을 신상정보 고지의 부과 요건으로 삼고 있다.¹⁸⁾ 따라서 성범죄와 같이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바로 부과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으로서, 그 목적과 성격,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17) 박광현, 앞의 논문, 308쪽;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17쪽;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2010, 274-275쪽.

18) 김성돈, 형법총론 제6판, SKKUP, 2020, 873쪽.

3. 소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도의 효과에 관한 논의 이외에 법적 성격에 관하여도 논의는 계속되었다. 왜냐면 형식적으로 제도의 도입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려는 방법은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벌의 성격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형벌의 실질적 개념은 행위자가 과거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부과하는 해악으로서의 반작용이다.¹⁹⁾ 이 개념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도 실질적 형벌로 볼 수 있다. 행위자가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로 인하여 법관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고, 선고받은 고지명령으로 신상정보가 일정한 주민에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에게 자신의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알려졌다든 사실에서 성범죄자는 수치심을 느낄 것이고 행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개인에 따라서 형벌보다 더 큰 해악일 수 있다. 물론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기준으로 형벌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는 없다.²⁰⁾ 형식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목적과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목적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앞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명령이 선고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살펴보았는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형식적으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과 이로 인해 얻으려는 효과 그리고 효과를 발하는 시점을 고려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보안처분으로 봐야 한다.

III. 해외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이 장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미국과 영국을 살펴보기로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제도를 먼저 실시한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와 영국은 성범죄자 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는 미국처럼 원칙적으로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공개해서는 안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19) 배종대/홍영기, 앞의 책, 93-94쪽; 홍영기, 형법 총론과 각론, 박영사, 2022, 6쪽.

20)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31쪽.

규정하고 있다.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미국과 다르게 시행하였다. 그 당시 영국의 사회적 환경이나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제도의 시행에 큰 차이점이 발생하였다. 그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영국의 성범죄자 관리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각 나라의 정부 방침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제도의 모습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 여부라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은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을 법률상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를 하면 안 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여 그 경우에 해당할 때 비공개하고 있다. 반대로 영국은 비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 양국 모두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국과 영국, 두 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위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간략히 살펴보겠다. 미국은 제도의 기원으로서 연구의 의미가 있으며 영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나라와 다르게 성범죄자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성범죄에 대응하는 미국과 영국의 모든 법률과 제도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이유, 목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논의의 집중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직접 다루는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만 논하겠다.

1. 미국의 성범죄자 관리제도

미국은 각각의 주마다 다르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대응책 또한 다르다. 모든 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어려우므로 각각의 주에서 시행하고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법률로 제정한 메간법(Megan's Law)과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고지에 관한 법률(SORNA)²¹⁾만을 살펴보겠다.

메간법은 미국에서 통일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신설에 있어 영향을 끼친 법률이며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고지에 관한 법률(SORNA)는 주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제도의 기준을 표준화한 법률이기 때문이다.

21) 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SORNA.

1.1 메간법(Megan's Law)

1994년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7세의 여자아이 메간 칸카(Megan Kanka)는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는 이웃집 남성의 말에 그의 집으로 갔다가 강간을 당한 후 살해당했다. 메간의 이웃에 사는 남자는 소아에 대한 성적 도착이 있는 자로 이미 두 건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다. 메간의 부모는 이웃의 전과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었으며 만약 이웃에 그러한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메간을 그 집에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운동을 벌였다.

이에 1994년 뉴저지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법집행기관과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만들어졌으며 1996년에는 주 정부 차원을 넘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연방메간법을 입법화하였다. 연방메간법 아래에서 연방정부는 주 정부가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고지하도록 요구하였다.²²⁾

메간법(Megan's Law)의 입법 배경에서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이 법은 지역 주민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아동 성폭행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²³⁾ 그러나 미국 각 주에 메간법이 시행되면서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포함되는 범죄가 확대되었는데 근친상간,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간이나 노출, 아동포르노 제작 등의 비접촉 성범죄자까지 포괄적으로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속하게 되었다.²⁴⁾

메간법의 제정 이전에도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거나 공개하는 법률이 각 주에 존재했으나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메간법의 제정으로 수사기관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이나 특정한 개인에게 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될 수 있었다.²⁵⁾

22) 성중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럽헌법연구 제32호, 유럽연구학회, 2020, 291쪽;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관한 평가연구(Ⅰ)-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76쪽 이하; 임희/박호정,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24쪽.

23) 이경재, 앞의 논문, 7쪽.

24)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앞의 연구보고서, 62쪽 이하.

25) 자세한 내용은 정현미/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메간법의 비교고찰”,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84쪽.

1.2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에 관한 법(SORNA)

메간법의 시행으로 미국의 모든 주는 지역사회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관한 요건이나 방식을 정하지 않아 각 주는 재량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성범죄자의 관리체계에 관해 포괄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방정부는 2006년 아담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Adam Walsh Protection and Safety Act., AWA)을 제정하였다. AWA의 목적은 각 주의 성범죄자 등록 기준을 연방정부의 기준으로 공식화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일반 대중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접하기 쉽게 하는 것이었다.²⁶⁾

AWA의 제1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에 관한 법(The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 SORNA)을 포함하고 있는데, SORNA는 각 주별로 다르게 시행하고 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제도를 표준화하고 주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 국가차원에서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고지제도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²⁷⁾ SORNA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고지에 관해 포괄적인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한다.²⁸⁾

SORNA는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 웹사이트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고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석방된 성범죄자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웹사이트에서 성범죄자를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미 등록된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등록된 성범죄자의 정보는 고지제도를 통하여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와 시행방식이 같다.

26) 임희/박호정, 앞의 논문, 28쪽;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원, 앞의 연구보고서, 82쪽.

27)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원, 위의 연구보고서, 82-83쪽.

28) 미국의 SMART Office는 2006년 아담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에서 승인되었고, 아담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의 시행에 관하여 지침을 제공하고, 각 주와 지방 정부, 민간단체와 공공단체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성범죄자와 관련된 법률을 조사하고 성범죄자의 등록, 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SMART, "Office of Sex Offender Sentencing, Monitoring, Apprehending, Registering, and Tracking", 2022. 9. 22, <smart.ojp.gov>, last visit: 2023. 3. 11.

1.3 소결

미국의 모든 주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일반 시민에게 직접 고지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SORNA에서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²⁹⁾ 미국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법률 및 제도 시행 초기에는 법집행기관에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할 뿐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형사사법기관만이 열람할 수 있었다. 메간 칸카의 사건 이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지역사회에 공개하라는 법이 뉴저지주에서 먼저 만들어진 후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연방메간법을 제정하였다. SORNA는 각 주에서 다르게 시행되고 있었던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2. 영국의 성범죄자 관리제도

영국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성범죄자 관리제도를 만들었지만 제도의 운영방식은 미국과 정반대이다. 미국과는 다르게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개하고 있다. 공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가 경찰서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청했다고 하여 무조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요청을 받은 경찰서의 엄격한 위법성 심사를 거쳐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할 사유가 합당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³⁰⁾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져서 일반 대중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³¹⁾ 즉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도 각 경찰서의 엄격한 위험성 평가를 거쳐 특정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개할 뿐이다. 영국은 국가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성범죄의 예방과 수사에 활용한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생각하면 된다.

29) 김지선/김영중/오현아/이정원/강지현,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I):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122쪽 이하.

30)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원, 앞의 연구보고서, 108쪽.

31) Kristen M. Zgoba/Devin Cowan, "Sexual Offense Legislation Across the Pond: A Review of Community Sentiment Toward the United Kingdom's Implementation of Sarah's Law", *SEXUAL ABUSE Vol. 32 No. 4*, Sage, 2020.

2.1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1997)과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1997년에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1997)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을 처음 신설하였고 2003년에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을 개정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절차를 강화하였다.

1997년 제정된 성범죄자법(Sex Offender Act, 1997)은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예외적일 때 경찰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성범죄자의 정보를 학교나 특정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있었다.³²⁾ 이 법에 따르면 출소 후 성범죄자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이름이나 주소와 같은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법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수사기관이 파악하여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 아래에 제정되었다.³³⁾ 그러나 2000년 8살의 사라 페인(Sarah Payne)이라는 소녀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소아성애자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사라 페인의 죽음 이후 출소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만으로 아동과 청소년,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사라 페인의 부모는 미국의 메간법처럼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를 공개하는 사라법(Sarah's Law)을 제정하여 영국도 미국처럼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였다.³⁴⁾ 한 일간지도 성범죄자 50명의 얼굴을 지면에 싣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캠페인(Name and Shame)을 벌였으며 아동 성범죄자의 존재를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영국 시민들은 1997년 제정된 성범죄자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국 의회는 이러한 여론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00년 성범죄자법을 개정하면서 공개적인 고지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대신에 일반 대중에게 지역별 성범죄자의 숫자만 공개하도록 성범죄자법을 개정하였다.³⁵⁾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에서는 1997년 성범죄자법에 비하여 성범죄자 등록절차가 강화되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변화가 있으면 1997년 성범죄자법에서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자신의 신상정보 변동사항을 등록하였으나 2003년 성범죄법에

32) 박광현, 앞의 논문, 317쪽 이하; 조윤오, “영국 경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활용 방향 시사점 고찰: 지역사회 강제명령(Civil Orders)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238쪽 이하.

33) 자세한 내용은 성중탁, 앞의 논문, 294쪽 이하.

34) Kate Blacker/Lissa Griffin, “Megan’s Law and Sarah’s Law: A Comparative Study of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Schem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Criminal law bulletin Vol. 46 No. 5*, THOMSON WEST, 2010, pp. 992-993.

35) 성중탁, 앞의 논문, 296쪽.

서는 3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변동사항을 등록하도록 개정하였다. 2003년 성범죄법도 성범죄자의 등록 규정만을 강화했을 뿐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는 않았다.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예외적일 때에 경찰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³⁶⁾ 이때에도 신상정보를 모든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지역사회기관에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³⁷⁾ 1997년에 제정되고 2000년에 개정한 성범죄자법과 2003년 제정한 성범죄법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인 통지제도는 규정하지 않으며 공개를 해야 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개 범위를 정해서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다기관 공중보호 규정(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 MAPPA)

2000년에 제정된 형사사법기관 및 법원법(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 Services Act, 2000)을 근거로 하여 다기관 공중보호 규정(MAPPA)을 신설하였다. 다기관 공중보호 규정은 지역의 경찰,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과 같은 지역의 책임기관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와 흉악범죄자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³⁸⁾ MAPPA에서는 미국처럼 일반 대중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경찰이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에 예외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 학교, 고용주나 임대인 등에게 공개할 수 있다.³⁹⁾ 예외적으로 시민의 보호를 위해 정보공개가 필요한 때에도 합법적인 권한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을 때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이는 정보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⁴⁰⁾

36)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원, 앞의 연구보고서, 108쪽 이하.

37) 자세한 내용은 성중탁, 앞의 논문, 294쪽 이하.

38) 성중탁, 앞의 논문, 296쪽 이하;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원, 앞의 연구보고서, 108쪽 이하.

39)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원, 위의 연구보고서, 109쪽 이하.

40) 자세한 내용은 한상암,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를 위한 영국의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정담론 제7권 제1호, 아시아교정포럼, 2013, 90쪽 이하.

2.3 검토

현재 영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얻을 수 없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나 아동·청소년의 보호자, 성범죄의 피해자들이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길 원한다면 그들은 경찰에게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⁴¹⁾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경찰의 심사를 거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결정이 난 후에도 공개 요청을 한 개인에게만 공개한다. 이를 살펴보았을 때 영국은 국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률 및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영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는 경찰·지방자치단체 그 외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핵심으로 각 기관이 연대해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²⁾ 성범죄에 있어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끼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국가기관이 범죄예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소결

영국과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지만, 제도의 운영방식은 다르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하는가이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비공개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반대로 영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를 받는 시민의 범위도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관련된 기관이나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미국의 영향을 받아 2000년에 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종류

41) 2007년 영국정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검토보고서(The Review of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 Offenders)’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했으며 2008년 영국 내무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공개제도(The Child Sex Offender Disclosure Scheme)’를 시행하였지만 이 제도도 신상정보 공개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원, 앞의 연구보고서, 109-110쪽.

42)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권, 한국형사법학회, 2002, 267쪽.

는 늘어났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제는 영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제도처럼 일반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필요한 시민의 정보공개요구가 있을 때 알려주는 방식을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다. 우리나라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신상정보 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최선인지 고지서 수령자의 입장에서 논해보고자 하였다.

IV.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대한 비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⁴³⁾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림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신상정보를 직접 우편 고지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합헌결정을 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⁴⁴⁾은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대해서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신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본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에서 생활하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고 싶은 주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 고지제도까지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으로 봐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대상에 속하면 일률적으로 고지서를 받고 있다. 법에는 고지서 수령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고지서의 거부에 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위헌 소원에서 위헌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3인의 의견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실명인증절차만 거치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신상에 관한 정보는 물론이고 그가 저지른 범죄행위, 위치추적장치의 부착 여부, 현재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상세주소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얻는 방법이 이미 존재함에도 고지서 수령대

43)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164(병합) 결정.

44)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164(병합) 결정, 재판관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위헌의견.

상에 포함되면 국가가 일률적으로 모바일 앱이나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고지서 수령대상 본인의 동의 없이 고지서를 받는 방식과 관련해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받고 싶지 않은 수령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5항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수취하는 대상이 규정되어 있고 이 대상에 속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고지서를 받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법안만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을 뿐⁴⁵⁾ 반대로 현재 고지서의 수령대상이어서 고지서를 받고는 있지만 받기를 원하지 않는 수령자에 대해서는 논의된 것이 없다.

두 번째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지역 주민에게 발송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범죄예방의 책임을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생각이다.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세우거나 범죄가 발생했다면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신상의 특징을 같은 지역에 사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그들을 교육하는 기관에 알려주는 것이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라는 예방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⁴⁶⁾ 왜냐면 성범죄자가 지역으로 전입할 때 신상정보 고지서를 보내고 후속 예방책이 따로 없다는 사실에서, 고지서를 받은 지역 주민은 주변의 성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이 범죄예방 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가 져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국가가 일괄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방식에 대하여 첫 번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을 권리 두 번째 범죄예방 책임의 전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45) [2116219]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18인), 최혜영 의원을 포함한 18인의 국회의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을 발의. 발의안의 내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항의 개정이다.

46) 송영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효”,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26쪽; 이경재, “性犯罪者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3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397쪽.

1.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을 권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을 권리라고 했지만 이런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대상에 포함되면 수령자는 고지서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고지서의 수령이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처럼 여겨진다. 따라서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대상 의사의 반영 없이 여성가족부의 일률적인 고지서 발송에 대한 반대되는 뜻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을 ‘권리’라고 표현하였다.

현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받는 대상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친권자와 법정대리인 가구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보호기관의 장⁴⁷⁾이다. 몇 차례의 법률개정을 거치면서 고지를 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며, 고지의 방법 또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처음에는 집으로 보내는 우편 고지만을 실시했으나 2021년 1월 5일부터는 스마트폰의 앱을 통한 모바일 고지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모바일 고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고지를 우선 발송하고 모바일 고지를 확인하지 않은 가구에 다시 우편으로 고지한다. 그 외의 고지서 수령자에게는 우편으로 신상정보를 알리고 있다. 이같은 고지서 발송 절차를 살펴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의 시행 근거 법률에는 고지서를 수령하는 대상과 고지가 되는 성범죄자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고지서를 받는 일반 시민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싶지 않을 때 고지서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법률에 규정된 고지서 수령대상에 포함되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지서를 수령하는 대상자의 대부분은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것에 찬성하고 있지만 불편함을 얘기하는 소수의 의견도 존재한다. 201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⁴⁸⁾에서 발간한 연구총서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관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우편 고지를 수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69.1%가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내 주변에 성범죄자에 대해 알려줘서 좋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했지만, 16.0%는 우편 고지 수령 이후에 불쾌감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조사에 나온 불쾌감을 느낀 원인의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본다면 첫

47) 어린이집의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 ‘아동복지법’의 지역아동센터의 장,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48) 현재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나 연구를 진행했던 당시에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었으므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표기하였다.

번째는 ‘정부가 대책 없이 신상정보를 알려 주는 것 같아 무책임하게 느꼈다’는 것이 60.1%로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모르는 사이에 자녀가 볼까봐’라고 답한 사람이 17.1%, 세 번째는 ‘우편 봉투만 보고 이웃이 오해할까봐’라고 답한 사람이 13.7%, 네 번째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알게 되어서’가 9.1%를 차지하였다.⁴⁹⁾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불편함을 표하는 의견은 소수이고, 또한 고지서 수령을 불편해하는 이유들은 입증 가능한 논리적인 근거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불편함에 기인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의견이 소수여도 이에 관한 인지는 있어야 한다.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고 싶은 권리만큼 그것을 모름으로써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일상도 중요한 가치이며 권리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언론에 가혹한 성범죄 행위가 보도되고 성범죄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행위에 비해 불충분한 형벌을 선고받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정부에게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도 어떻게 하면 성범죄자 실거주지의 정확성을 높일지 신상정보의 고지를 받는 대상을 늘려야 하는지 등 제도의 확장에 관한 논의만 진행되고 있다.⁵⁰⁾ 2011년 청소년성보호법에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점점 고지되는 성범죄와 고지서를 수령하는 대상의 확대만 있었다.⁵¹⁾

성범죄자가 주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국가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주변에 성범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사전에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유익한 정보여도 개인에 따라서는 불쾌하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달받는 정보의 성질과 일방적인 정보의 고지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반영될 수 없는 일방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은 정보의 유익함과 상관없이 전달받는 것만으로 자신의 일상을 침범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⁵²⁾

49) 이에 대한 조사로는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앞의 책, 264쪽 이하 참고.

50) [21123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12인), 현재 제5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에서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심사중에 있다.

51) [211746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등 11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판결·명령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는데 신상정보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음. 반면 신상정보 고지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가구 및 보호시설·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이미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인터넷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본인의 필요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방법이 있음에도 국가가 나서서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보내고 있다. 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방법은 없으며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알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신상정보 고지서를 무시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모바일 앱에 온 알림은 확인하지 않으면 되고 모바일 고지를 확인하지 않아 차후에 집으로 배송된 우편 고지서는 받아서 뜯어보지 않고 바로 버리는 방법으로 원치 않는 정보를 회피할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 이름으로 온 고지서를 개인이 무시하기는 힘들다. 집 앞의 우체통에 바로 배달되는 우편 고지와 본인의 핸드폰으로 알림이 뜨는 모바일 고지 모두 일반 시민은 확인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낄 수 있다.⁵³⁾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가구에 우선 모바일 앱을 통한 고지가 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가구에 한정하여 다시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따라서 고지서를 무시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받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불편하다는 이유가 일상생활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자녀에게 어떻게 성범죄자를 알려줘야 하는지 난감해서 또는 나의 의지와 상관 없는 불쾌한 정보가 나의 일상으로 침범하는 것 같아서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가 국가가 알려주려는 신상정보의 목적과 내용의 유익함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일 수 있으나 개인이 일상에서 평온한 상태를 누리고자 하는 의사도 개인의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나아가 국가가 알려주려는 정보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권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2. 범죄예방 책임의 전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리는 이유는 주위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면 자신과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행위를 할 것이고 또한

52) 이에 관하여는 홍영기, “알 권리와 모를 권리”, 윤진수/한상훈/안성조, 법의 딜레마, 법문사, 2020, 644-645쪽.

53) 홍영기, 위의 책, 645쪽.

지역 주민들이 성범죄자를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 성범죄자의 부적절한 행동을 인지했을 때 경찰에게 신고하여 빠르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어떻게 행동해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부터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자의 신상을 어떻게 알려줘야 효과가 있는지 나아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동네에서 마주친다고 해도 고지된 성범죄자인지 알아보기 어렵고 설령 알아차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아는 시민은 더욱 드물 것이다. 제대로 된 성범죄 예방 교육을 받아 본 적 없는 일반 시민에게 신상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실제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또한 형사사법기관처럼 범죄의 예방 및 대처에 대해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행동하기도 어렵다.⁵⁴⁾ 실제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고지받은 지역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성범죄자가 이사를 오자 성범죄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성범죄의 불안감에 성범죄자를 피해서 자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⁵⁵⁾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은 다른 시민들에 비해 성범죄자의 존재를 실제로 인지한 경우이므로 성범죄의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실존하는 성범죄자의 존재를 인지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성범죄의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여기고 궁극적으로 성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해야 하는 성범죄의 예방책임을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위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으니 주민 스스로가 일상생활에서 범죄로부터 안전을 챙겨야 한다는 의도를 내포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물론 주민 스스로가 범죄예방 활동을 한다는 것이 국가가 범죄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미 신상정보가 고지되는 성범죄자는 국가에 성범죄자로 등록된 관리대상이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다른 보안처분과 비교해 보자면 속칭 ‘전자발찌’로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GPS로 성범죄자의 동선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데 성범죄자가 학교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허용되지 않은 곳을 가면 관리자에게 신호가 가는 방법으로 그것의 부착 이후에도 법무부의 감독 아래에 놓여 있어 계속된 관리가

54) 이경재, “性犯罪者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3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1, 397쪽.

55) 오마이뉴스, 김두나, “후덜덜...이웃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그 후-”, 2012. 6. 14, <<http://bit.ly/LV17rY>>, 검색일: 2023. 04. 20.

가능하지만, 신상정보 고지서는 성범죄자가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전출할 때만 일회적으로 발송될 뿐 고지서를 보낸 후 뒤이은 후속 조치가 행해지고 있지 않다. 알리는 것에만 그치는 일회적인 예방조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신상정보 고지서에는 성범죄자의 정보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및 국가가 시행하는 성범죄자 예방제도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고지서의 앞면에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유심히 볼 뿐 뒷면의 내용까지 숙지하는 시민은 드물 것이며 성범죄자의 신상을 안다고 해서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는 시민은 더더욱 드물 것이다. 따라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받은 시민들은 국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주변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 불쾌감을 느끼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호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법을 몰라서 불안함을 느낀다.⁵⁶⁾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이나 보호기관에서 ‘너무 밤늦게 다니지 말아라’, ‘밤에 골목길을 걸어갈 때 귀에 이어폰을 끼지 말아라’라는 말은 이미 하는 범죄예방 교육일 것이고 이 이상 어떤 범죄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렵다. 적극적으로 신상정보 고지서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본다면 성범죄자가 사는 실제 주소를 확인하고 그 동네를 비켜 간다거나 거주지가 있는 골목으로 다니지 말라거나 하는 정도일 것이다.

결국, 국가가 신상정보 고지서 발송 이후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성범죄자가 가까이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을 알려준 셈이 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범죄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개인이 피하는 소극적인 예방뿐인데 이미 실생활에서 하는 범죄예방 조치 이상 어떤 적극적인 예방이나 개입을 개인에게 요구하기는 힘들다. 특별한 범죄의 예방대책 없이 알려주는 것은 불안만을 가중할 뿐이다. 원칙적으로 범죄예방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범죄를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국가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을 해야 한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서를 보내는 것은 성범죄자를 알려줬으니 그에 대한 예방은 지역 주민들이 하라는 예방책임의 방기가 될 수 있다.

56)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앞의 연구보고서, 425쪽; 김지선/김영중/오현아/이정원/강지현, 앞의 연구보고서, 348쪽.

3. 개선방안의 제안

고지서를 받고 싶지 않을 권리와 범죄예방 책임의 전가라는 측면에서 신상정보 고지서의 발송 방식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고지서 수령대상에 포함된 대상이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기를 원하는 시민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대해 앞에서 지적했던 두 가지 부분을 반영하여 시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인 방안, 소극적인 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첫 번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고지제도를 모두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폐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로 일원화하는 방법이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에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본인인증만 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도 알 수 있다. 2014년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도 만들었다.⁵⁷⁾ 모바일 앱에서도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본인인증 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나아가 모바일 앱에는 성범죄자의 위치 알림 기능이 있어 위치 알림신청을 해놓는다면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를 메시지나 음성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추가되는 성범죄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모바일 앱의 하단에는 고지정보서 열람 버튼이 있어 고지서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모바일 앱에서 알림을 설정하거나 고지서 열람 신청을 하면 현재 시행 중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와 다를 바가 없으며 고지제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영국식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도입이다. 우리나라도 성범죄자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정확히 ‘도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도의 방향을 전환해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영국의 성범죄자 관리제도는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지역 경찰서가 성범죄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성범죄자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심사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적용할 수 있다. 신상정보 고지서 수령대상에 속한다고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지 말고 우선 고지서를 수령하는 가구에 신상정보

57) 여성가족부, “걱정 덜어주는 안심 서비스, 성범죄자 알림e”, 2020. 09. 23,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14&bbtSn=708744>, 검색일: 2023. 4. 20.

고지서를 받을 것인지 수령 여부를 조사한 후에 수령에 동의한 사람에게 모바일 앱이나 우편을 통해 고지서를 발송하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은 수령에 동의를 선택할 것이고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은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할 것이니 자신의 의지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고지서 수령대상에 속한 가구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있는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고지서 수령 자체에 대한 동의를 먼저 조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도를 비공개로 원칙으로 공개를 예외로 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전달할 때 수취를 거부할 방법도 함께 기재해 놓는 것이다. 신상정보 고지서를 거부하는 방법은 청소년성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제도의 시행방법 어디에서도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현재 모바일 앱이나 우편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고지하면서 이를 거부할 방법은 따로 고지되고 있지 않다. 차후에 고지서를 다시 받고 싶지 않을 경우도 생각하여 모바일 앱이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할 때 고지서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기재해 놓아 정보를 받을지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V. 결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와 관련된 대다수 연구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형기를 마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 것이 합법적 인지에 관한 측면에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제도의 시행 목적인 성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연구 모두 신상정보 고지서의 수령이 당연하다는 가정 아래 이루어지는 논의들이다. 그러한 연구들과 달리 이 글은 성범죄자 고지서를 받는 시민들의 권리, 특히 알고 싶지 않은 시민에 대해서도 논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작성해 보았다.

국가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 ‘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이미 공개하고 있다. 그러한 공개사실을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만 한다면 자신의 거주지역 내 성범죄자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고 공개된 정보를 얻는 방법도 쉽다. 따라서 성범죄자 고지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시민의 존재 인식과 더불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가정에 일괄적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보내는 지금의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모를 권리’라는 것이 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환자가 자신의 유전정보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면 유전정보에 관해 무지상태에 있을 권리를 말하며, 이러한 무지상태는 당사자에게 그 자체로 중요한 이익이다.⁵⁸⁾ 간단하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면 유전병이 발병할 수 있는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지 이다. 유전병 소인을 알려주어서 언젠가 발병할 유전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발병이 확실하지 않은데 유전적 소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남은 생을 발병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주장도 존재한다. 유전병의 예를 들었지만 전염병을 상정했을 때는 논쟁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물론 의학계에서도 ‘모를 권리’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둘러싸고 논쟁도 있지만 적어도 ‘모를 권리’의 존재와 그것이 가지는 법익,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 앞에서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 인지된 상태이다. 이처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도 ‘모를 권리’의 인식이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 가운데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이런 시민들에게까지 청소년성보호법상 고지서 수령자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를 알림으로써 누리고자 하는 일상생활의 평온함을 침해하는 행위일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를 시행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고지제도의 확대만 있었을 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모르고자 하는 시민들의 ‘모를 권리’도 중요한 이익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58) 석희태,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149-150쪽; 이을상, “임상유전학에서 자기 결정권”, 인문과학연구 제31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428-431쪽.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성돈, 형법총론 제6판, SKKUP, 2020.
- 배종대/홍영기, 형사정책 제2판, 홍문사, 2022, 483면.
- 홍영기, 형법 총론과 각론, 박영사, 2022.
- _____, “알 권리와 모를 권리”, 윤진수/한상훈/안성조, 법의 딜레마, 법문사, 2020.

2. 학술지

- 박광현,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제35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307-332쪽.
- 박찬걸,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고지·공개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99-120쪽.
- 석희태,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145-173쪽.
- 성중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유럽헌법연구 제32호, 유럽헌법학회, 2020, 273-310쪽.
- 송영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의 소급효”,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219-243쪽.
- 심희기, “신상공개의 정당화근거와 적절한 공개대상과 공개기준의 탐색”, 저스티스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24-38쪽.
-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제65호, 한국법학원, 2002, 5-23쪽.
- _____, “性犯罪者 신상정보 공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원법학 제33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01, 361-405쪽.
- 이병희,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17권, 한국형사법학회, 2002, 259-278쪽.
- 이을상, “임상유전학에서 자기 결정권”, 인문과학연구 제31집,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421-454쪽.

임희/박호정,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법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1권 제6호,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23-42쪽.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방적 효과”,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2010, 269-290쪽.

정현미/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미국 메간법의 비교고찰”, 법학논집 제12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179-199쪽.

조운오, “영국 경찰의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활용 방향 시사점 고찰: 지역사회 강제명령 (Civil Orders)을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235-252쪽.

한상암, “고위험군 범죄자 관리를 위한 영국의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 교정담론 제7권 제1호, 아시아교정포럼, 2013, 63-102쪽.

Kate Blacker/Lissa Griffin, “Megan’s Law and Sarah’s Law: A Comparative Study of Sex Offender Community Notification Schemes in the United States and United Kingdom”, *Criminal Law Bulletin Vol. 46 No. 5*, THOMSON WEST, 2010, pp. 987-1008.

Kristen M. Zgoba/Devin Cowan, “Sexual Offense Legislation Across the Pond: A Review of Community Sentiment Toward the United Kingdom’s Implementation of Sarah’s Law”, *SEXUAL ABUSE Vol. 32 No. 4*, Sage, 2020, pp. 476-496.

3. 신문기사

뉴스1, 박아론, ““다시 인천으로?” 미성년 11명 연쇄 성폭행 김근식 출소 앞두고 주민들 불안”, 2022. 09. 02, <<https://www.news1.kr/articles/?4791340>>, 검색일: 2023. 03. 23.

서울신문, 김유민, ““불안해 죽겠다”...11명 성폭행 김근식, 출소 후 거주지는”, 2022. 09. 0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904500059>>, 검색일: 2023. 03. 23.

오마이뉴스, 김두나, “후덜덜...이웃집에 성범죄자가 산다고?-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그 후-”, 2012. 6. 14, <<http://bit.ly/LV17rY>>, 검색일: 2023. 04. 20.

조선일보, 이가영,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신상공개는 되지만 ‘고지’는 안 된다”, 2022. 09. 0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4/UFCC5DDR2NDCVEXJ7HHAXRWOXM/>, 검색일: 2023. 03. 23.

쿠키뉴스, 임지혜, “[놀이터 통신] ‘성범죄자 이웃’ 생길까 두려운 학부모들”, 2021. 08.
23,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8200198>>, 검색일: 2023. 03. 23.

4. 웹자료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https://m.sexoffender.go.kr/m3s7.nsc>>, 검색
일: 2023. 3. 11.

5. 보고서

김지선/강지현/김정명/한국여성정책원,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관한 평가연구
(Ⅰ)-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김지선/김영중/오현아/이정원/강지현, 중형주의 형사제재의 실효성 평가연구(Ⅰ): 신상
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6. 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763 판결.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2헌바28 결정.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4헌바68·164(병합) 결정.

7. 기타자료

[211238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12인).
[21162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18인).
[211746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11인).

[Abstract]

Thinking about the Sex Offenders Notification System —Regarding Necessary Notification to a Local Resident—

Kim Hye Min*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2010 wit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Sexual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 from sex crimes by notifying certain resident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through mail. Therefo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ends Sex Offender Notification to those subject to the law when sex offenders who have been ordered to disclose and notify personal information move to or relocate to a certain area. However,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is sent only when there is a change in the residential area of the sex offender, and no separate preventive measures are taken thereafter. It only serves to inform that sex offenders live nearby. There may be citizens who do not want to know information, but in the current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if you are the recipient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you must receive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regardless of your intention. I wanted to discuss the means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In this article, I tried to focus on reminding that there are citizens who do not want to receive a Sex Offender Notification among the recipients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rather than directly suggesting an improvement plan for the means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Key Words]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System, The Disclosure System of Sex Offender's Information, Megan's Law, Sarah's Law, Right Not to Know

* Resercher,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